# 비밀유지계약서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번지에 본점소재지의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피에스 (이하 "갑"이라 한다) 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44-5)에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두고 있는 ㈜디에프텍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게 "갑"의 장비를 클리닝하는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하 "본 계약의 목적"이라한다)으로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9년 4월 4일자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비밀정보)

본 계약에서의 비밀정보란 본 계약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본 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이하 "공개당사자"라 한다)가 상대방 당사자(이하 "수신당사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거나 "공개당사자" 혹은 "공개당사자"의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정보로서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수신당사자"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상기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의 정보들을 포함한다.

- 1.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영업비밀, 발명, 아이디어, 프로세스, 컴퓨터 소스코드 및 목적코드, 공식, 데이터, 프로그램,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서, 가격표, 생산비용, 기타 저작물, 노하우, 개량, 발견, 개발, 디자인, 및 테크닉
- 2. 제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계획, 마케팅 및 비즈니스 계획, 예산안, 재무제표, 계약, 가격, 공급자, 및 고객에 관한 정보.
  - 3. "공개당사자"의 고용자, 계약자, 및 기타 에이전트의 능력 및 보수에 관한 정보.
- 4. "공개당사자" 및 "수신당사자" 또는 제 3 자 간의 비즈니스 검토, 협상, 또는 계약의 존재.
  - 5. "갑"이 거래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

## 제 2 조 (비밀유지 의무)

- 양 당사자는 "공개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가 "공개당사자"의 소유임과 공개 시 "공개당사자"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합의한다. 다만, 제 3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수신당사자"는 "공개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2. "수신당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한다.
- 3. "수신당사자"는 허락된 목적범위 외의 목적으로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4. "수신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 및 고용인 또는 수임인으로서 본 계약과 내용상 실질적으로 유사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거나 본 계약에 구속되는 자들에 한해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의 접근을 제한한다.





- 5. "수신당사자"는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를 분실하거나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동 비밀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개당사자"에게 통지한다.
- 6. "공개당사자"는 "수신당사자"에게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하지아니한다.
- 7. "수신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실수로 또는 고의로 누출한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11

1 2

- 1. "수신당사자"는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수신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
  -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수신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개된 정보
  -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수신당사자"가 적법하게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수신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5) 비밀정보를 제공한 "공개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공개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공개당사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수신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취하여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제 3 자(이하 "제 2 수신당사자"라 한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와 "수신당사자" 및 "제 2 수신당사자"간의 비밀유지계약체결 후에만 "수신당사자"는 "제 2 수신당사자"에게 동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제 2 수신당사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수신당사자"와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

#### 제 4 조 (비밀의 표시)

- 1. "공개당사자"가 "수신당사자"에게 서면이나 서류(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개당사자"는 동 정보가 비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서류 등"에 "대외비", "confidential", 또는 "비밀"(이하 "비밀표시"라 한다) 중 1 가지 이상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 2. "공개당사자"가 "수신당사자"에게 구두나 영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공개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등 "서류 등" 이외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개당사자"는 제공 시 "수신당사자"에게 본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제공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밀표시" 중 1 가지 이상의 문구를 표기한 서면으로 "수신당사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3. 본 조 제 1 항과 제 2 항의 "비밀표시"중 1 가지 이상의 문구가 표기되지 않거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는 비밀정보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 5 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수신당사자"는 "공개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재생산하거나 변형하지 않는다.

#### 제 6 조 (자료의 반환)

"수신당사자"는 "공개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공개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개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 7조 (권리 의무의 양도)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 3 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 제 8 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공개당사자"의 소유에 속하며,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신당사자"에게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의 체결, 제조물 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내부규정의 준수 등)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지적재산권의 소유)

"공개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에 따라 "수신당사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허, 노하우, 기술 등의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수신당사자"는 즉시 "공개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소유권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후 서면으로 이를 정한다.

## 제 11 조 (계약의 분리 가능)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보증)

"공개당사자"는 "수신당사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공한 비밀정보가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나 비밀정보의 정확성 또는 상품성 등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13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제 14 조 (계약의 해제, 해지)

본 계약기간 중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서상의 각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시정이 가능하여 그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중요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경매, 공매 등의 신청을 받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 3.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의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4. 조세공과금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 5.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허가취소, 보는 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자진 폐업, 휴업하는 경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6. 자신이 발행 또는 인수하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제 3 자의 명의로 발행하고 자신이 보증 또는 배서한 어음·수표의 부도의 경우.
  - 7.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 8. 기타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

#### 제 15조 (계약 기간)

- 1.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제 5조 및 제 10조의 규정은 본 계약의 종료 후 3년간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2. 본 계약의 체결 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당사자"가 "수신당사자"에게 이미 제공한 비밀정보도 본 계약의 규정에 구속된다.

3. 본 계약에 따른 비밀정보에 대한 비공개, 비사용 의무는 본 계약이 제 14 조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 되거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된다.

#### 제 16 조 (손해배상 책임)

-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해진 확약사항 또는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제 3 조 제 2 항에 의하여 "수신당사자"가 "제 2 수신당사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후에 "제 2 수신당사자가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제 2 수신당사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개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신당사자"는 "공개당사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 제 17 조 (분쟁의 해결, 준거법 등)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 2.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 및 법규에 의하여 준거, 지배, 해석 및 정의된다.
- 3. 본 계약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원 대한민국 및 전세계에서 계약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B) (82 / B)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 통씩 보관한다.

"갑": ㈜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지제를 경험자 대표이사 문 상 영제의 기계

"을": ㈜디에프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공동 644-5

대표이사 현일 선생활